

---

# 법관평가기구 구성방안

---

2021. 12. 8.

---

# 사법행정자문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제안서

-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기구 구성방안 제안-

---

2021. 12. 8.

## 1

## 법관평가제도의 취지

- 현행법상 법원 내 평정 결과가 판사 인사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 및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2008년 서울지방법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겪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관 인사에 변호사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98)이 국회에 계류 중임(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고, 법관 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 간 협의하도록 하려는 취지.

\* [별첨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참조

## 2

**‘법관평가기구’ 설치 관련 논의 진행 경과**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인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이하,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법관평가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평가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낸바, 2021. 6. 9.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추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하여 대한변협이 제시하는 방안과 함께 안건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 대한변협 상임이사회는 2021. 6. 28. 법관평가기구 준비 TF를 설치함(대한변협 임원, 대한변협 산하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일부를 TF 구성원으로 함).
- 대한변협 법관평가기구 준비 TF는 법관평가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조사·논의한 바, 대한변협 산하에 법관평가기구로서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전국적 통일적으로 법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변협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제안하기로 함.

**3**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구성안**

\* [별첨 2]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규정안 참조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은 총 **12인**으로 구성(대한변협 협회장 지명 변호사위원 4인, 대법원장 추천 법관위원 4인, 외부위원 4인). 외부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위원 구성		
변호사위원	대한변협 협회장 지명 변호사	4인
법관위원	대법원장 추천 법관	4인
외부위원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인사	1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인사	1인
	법무부 추천 법무부 공무원	1인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 (행정안전부장관 <sup>1)</sup> 또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추천)	1인
총 계		12인

-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위원 등 법관평가업무에 참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함.
-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평가확인 소위원회,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 선정 소위원회, 법관평가표 검토 소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집중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전체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임.

1) 비영리민간단체 소관 부처

■ **관련 규정(안)**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 변호사위원 4인
2. 대법원장이 추천한 법관위원 4인
3. 변호사나 법관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부위원 4인
  - 가.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추천한 자 1인
  - 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한 자 1인
  - 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법무부 공무원 1인
  - 라.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1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퇴직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임원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위원 등 법관평가업무에 참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출범 일정**

법관평가기구 구성안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규정’을 확정**하게 됨.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규정이 통과되는 대로, 대한변협과 대법원 양 기관이 바로 위원 구성에 들어간 뒤, **내년 초 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함.**

## ○ 위원회의 업무

### ① 법원행정처에 송부할 ‘법관평가보고서’ 작성 업무

- 앞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sup>2)</sup>해 올 예정인바, 이관 이후 매년 법관평가 결과가 취합되면 위원회에서 법관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법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한변협은 위원회 작성 법관평가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할 예정임.
- 법관평가보고서에는 법관평가 기준, 방법, 표본 수, 평가 결과 송부 대상이 되는 법관의 평가결과(평점 및 서술식 평가내용 등),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 선정에 관한 내용(선정된 법관 및 그 선정기준 등) 등이 기재될 예정임.
- 평가 결과 송부 대상이 되는 법관은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으로 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방별 법관 및 변호사 수, 평가표 집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판단하여 정하도록 할 예정임.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에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하여만 통보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정권자에게 통보되는 대상법관의 기준을 5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법관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대상법관의 기준이 정해져야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음

2) 구체적인 이관계획에 대해서는 “4. 법관평가제도 운영 계획” 부분에서 후술

■ 관련 규정(안)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법관평가보고서의 작성

제10조 [법관평가의 절차] ④ 위원회는 각 지방회가 송부한 집계표를 종합·분석하여 평가연도의 법관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협회에 보고한다.

⑤ 협회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법관평가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제11조[법관평가보고서] ① 법관평가보고서에는 법관평가 기준, 방법, 표본 수, 평가결과 송부 대상이 되는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평점 및 서술식 평가내용을 포함한다),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 선정에 관한 내용(대상 법관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평가결과 송부 대상이 되는 법관의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② **우수법관, 하위법관 선정 업무**

-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 하위법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이를 자율적으로 법원에 송부하거나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다만 선정 여부와 그 기준, 결과 공개 여부에 있어 각 회 별로 차이가 존재함).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해 온 이후에는 지방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우수법관, 하위법관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 우수법관, 하위법관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현재 가장 많은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5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은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10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은 법관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존의 선정기준, 각 지방별 법관 및 변호사 수, 평가표 집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판단을 통해 정할 예정임.



■ 관련 규정(안)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2.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의 선정

제12조[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 ① 위원회는 평가연도의 법관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하여 이를 협회에 보고한다.

②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③ **법관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여부 및 그 범위 등에 대한 자문**

-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해 온 이후에는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언론 공개여부 및 그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며,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도 공개의 주체를 각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대한변협으로 단일화 할 예정임.
- 현재 대한변협이 실시 중인 검사평가의 경우 실명은 우수검사만 공개하고, 하위검사는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그 사례만을 익명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긍정적, 부정적인 서술형 의견들은 익명처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법관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우수법관만 공개하고 그 외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는 익명화하여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경우에는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가 평정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 기준 및 공개 기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를 지양하되,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우수법관을 포함하여 실명이 아닌 사례 중심의 공개, 법관평가 기준, 방법, 표본 수 등의 통일 및 구체적 공개, 공개 주체의 단일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 관련 규정(안)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3. 법관평가결과의 대외 공개여부 및 그 방식에 대한 자문업무

제13조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 ① 협회는 범위를 한정하여 법관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 여부 및 그 범위와 방식 등은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협회장이 결정한다.

④ **법관 인사 평정권자의 법관평가 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업무**

- 법관 인사 평정권자가 평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법관평가 점수가 다른 평정자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례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 등) 대한변협에 의견조회를 하여 법관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해당 확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위원회 내부에 ‘평가확인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관평가의 경우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진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확인 과정에서 평가자의 실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사건번호 등)가 피평가자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평정권자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평가표를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정권자가 평가결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 평가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그 밖에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임.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평가자료에 대한 ‘평정권자의 확인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다만 확인절차에서 평가자의 실명(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 포함)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 관련 규정(안)

제2조[법관평가의 기본원칙] ① 법관평가는 평가자의 신상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평가대상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법관평가결과 공개 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4. 법관인사평정권자의 법관평가 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제14조[법관평가 결과 확인절차] ① 법관 인사 평정권자는 법관평가 점수가 다른 평정자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례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 등 인사 평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법관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조회에 대해 회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법관평가 결과 확인업무의 수행 시에 평가자의 실명 및 사건번호를 비롯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평가대상 법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⑤ **법관평가표 개별 문항에 대한 개선 보완 업무**

-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을 보완하고 현행 객관식 문항뿐만 아니라 서술식 평가를 보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임. 위원으로 변호사, 법관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가 참여할 예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법관평가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 현재 객관식 문항에 서술식 평가의 보완 및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 관련 규정(안)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6. 법관평가의 항목, 기준, 등급 등의 개선·개발

## ⑥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사건 관여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마련

- 변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법관이 관여한 사건 번호를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지만, 기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평가 변호사가 실제로 피평가 법관이 수행한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측 의견이 제시된바, 위원회에서 평가자의 사건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가자의 사건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과 대한변협이 변론(공판)에 관여한 대리인(변호인) 명단을 주고받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sup>3)</sup>, 각 기관의 전산 시스템 상황 등 실무적,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할 것이므로 추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 관련 규정(안)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5. 법관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연구
7. 기타 법관평가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변호사는 사건 수임 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거치므로 지방변호사회에 경유와 관련한 정보가 남아있기는 하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사건 수임 시 법무법인의 명의로 경유증표를 구입하므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경유증표 확인을 통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명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담당 변호사명, 특히 재판에 실제로 출석한 변호사명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 4

## 법관평가제도 운영 계획

-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관평가 업무를 빠르면 내년 중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법관평가 업무의 전국적 통일 작업 추진 중
  - 대한변협이 ‘전자 법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관평가 관련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전자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전자적 평가가 도입되면 변호사의 법관평가표 제출은 연중 상시 가능해지며,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대한변협이 연 1회 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게 될 것임.
  
-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기 전 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운영을 기할 예정
  - 법관평가 업무 이관 전까지는 법관평가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임. 다만, 법관평가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기 전 단계에서도 전국적 통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임.

### ① 법관평가표의 전국적 통일 완료

- 기존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표 일부 문항(8번, 10번 문항)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통일하여 올해 법관평가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채택해 평가를 시행함.

\* [별첨 3] 2021년 법관평가표 참조

8 번 문 항	통일 전			통일 후
	인천회	강원회	그 외 지방회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이 <u>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u>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이 <u>졸속하거나 지연되지 않는다.</u>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에 있어 <u>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u>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에 있어 <u>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u>

10 번 문 항	통일 전				통일 후
	서울회	강원회	광주회	그 외 지방회	
	판결문(이유가 기재된 결정문 포함)이 <u>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u>	판결문이 <u>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u>	재판의 진행 과정 혹은 결론의 도출 과정이 원활하고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다(재판이 판결 혹은 <u>대안적인 분쟁해결</u> 로 종결되었든, 혹은 현재 진행 중이든 관계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 혹은 결론의 도출 과정이 원활하고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다(재판이 판결 혹은 <u>ADR</u> 로 종결되었든, 혹은 현재 진행 중이든 관계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유가 기재된 결정문 포함)이 <u>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u>

## ② 법관평가 관련 일정 통일 완료

- 기존 각 지방변호사회마다 법관평가 관련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 법관평가부터 일정을 통일하여 같은 날 대한변협에 법관평가 결과를 송부하기로 하였으며, 언론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발표일을 동일하게 통일하기로 함.

일 자	내 용
2021. 11. 13.	각 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표 제출 마감
2021. 11. 19.	대한변협에 각 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송부
2021. 11. 25.	각 지방회 언론 발표

## ③ 권역 외 사건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할 지방변호사회 통일(예정)

-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권역 외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관평가표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바, 추후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처리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예정임.
- 사건을 어느 지역에서 수행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평가표를 소속지방변호사회로 제출하고, 소속지방변호사회에서 권역 외 사건에 대한 평가표를 법원 소재지 지방변호사회로 따로 송부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권역 외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관평가표의 처리에 대해 향후 법관평가 항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④ 사건 종결 전 제출된 평가표의 처리 방식 통일(예정)

-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평가자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법관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받아들 수 있는 판결문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판결문의 논리성 항목)<sup>4)</sup>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바, 추후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처리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예정임.
-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평가표를 제출한다면 해당 문항을 답변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그 문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부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된 평가표의 처리와 관련하여 향후 법관평가 항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 바 있음.

#### ⑤ 중복평가에 대한 검수 방식의 통일(예정)

-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평가자의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추후 법관평가 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여 전자적 방식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중복평가의 경우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할 예정임.

4) 법관평가표 10번 문항 : 판결문(이유가 기재된 결정문 포함)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중복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복평가 기준을 수립한 후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업무의 이관 전 단계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중복평가 검수 방식을 도입할 계획임.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중복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논의 시 이와 같은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중복평가 여부 판단 기준(서울지방변호사회)
① 동일한 회원이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미반영
② 동일한 회원이 다른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미반영
③ 동일 사무소 소속 회원이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미반영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중복평가를 방지할 기준을 수립하여 중복평가를 방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법관평가기구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 바 있음.

**5**
**기타 논의 필요 사항**
**○ 평가 집계·분석을 위한 예산 및 담당인력 필요**

정확한 평가결과 수집 및 통계추출 등에 용이하도록 법관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사무국을 대한변협 내에 두고자 함.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법원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기재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대한변협과 법원 간에 인력 파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

**■ 관련 규정(안)**

제15조[예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법관 근무평정 세부항목에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명시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의 근무평정에 재량으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무평정 항목의 세부항목 또는 설명으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추후 법관 근무평정 자료에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가 명문화 될 수 있기를 바람.

**[참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근무평정 항목에 별도의 항목으로 법관평가 결과를 신설하지 않고,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근무평정 항목의 세부항목 또는 설명으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명시”하기로 한 바 있음.

## ○ 장기적으로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전환할 필요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는 대한변협 회칙에 근거한 특별위원회<sup>5)</sup>의 형태로 구성될 예정임. 즉,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은 대한변협 내규인 규정 및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임. 앞으로 위원회가 출범하고 위원회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된 이후에는 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법원조직법 등에 명시하여, 이를 법정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음. 추후 이에 대한 입법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램.

[참고 사례]
<p><b>【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b>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변협 소속의 위원회임</p> <p>[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b>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b>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b>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li> <li>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li> </ol>

### ※ 첨부자료

[별첨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별첨 2]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규정(안)

[별첨 3] 2021년 법관평가표

5) 대한변협 회칙 제31조 [위원회] ① 이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별첨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8
----------	------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최기상 · 박상혁 · 정일영  
이형석 · 우원식 · 고용진  
임호선 · 기동민 · 한병도  
서동용 · 이학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판사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행 「법원조직법」은 연임 부적합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고,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 내 평정 결과가 판사 연임 여부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관의 연임 여부를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재판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 객관적인 자료가 법관인사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제6항 신설 및 제44조의2).

법률 제 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⑥ 인사위원회는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그 결과”를 “그 결과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 ⑤ (생략) &lt;신설&gt;</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 ② (생략)</p> <p>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p> <p>&lt;신설&gt;</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인사위원회는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 ----- ----- -----.</p> <p>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그 결과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p> <p>④ <u>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⑤ -----제4항----- ----- ----- -----.</p>

[별첨 2]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안)

##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의 법관평가제도 운영을 담당할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관평가의 기본원칙] ① 법관평가는 평가자의 신상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평가대상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법관평가결과 공개 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원회의 사무 및 구성

제3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법관평가보고서의 작성
2.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의 선정
3. 법관평가결과의 대외 공개여부 및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한 자문
4. 법관인사평정권자의 법관평가 결과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5. 법관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연구
6. 법관평가의 항목, 기준, 등급 등의 개선·개발
7. 기타 법관평가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 변호사위원 4인
  2. 대법원장이 추천한 법관위원 4인
  3. 변호사나 법관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부위원 4인
    - 가.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추천한 자 1인
    - 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한 자 1인
    - 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법무부 공무원 1인
    - 라.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1인
-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이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퇴직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임원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장 법관평가의 절차 및 방식

제9조[법관평가표] ① 평가자가 기재하는 법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에는 평가대상의 법원, 재판부, 법관명, 평가일, 사건번호, 평가변호사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평가표의 구체적인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법관평가의 절차] ① 법관평가는 평가자가 평가연도에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평가자는 자필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평가표를 작성한 후 이를 평가자가 속한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각 지방회는 소속 회원이 제출한 평가표를 취합한 후 이를 협회가 지침으로 정하는 집계표에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평가 연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한다.

④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송부한 집계표를 종합 분석하여 평가연도의 법관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협회에 보고한다.

⑤ 협회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법관평가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제11조[법관평가보고서] ① 법관평가보고서에는 법관평가 기준, 방법, 표본 수, 평가 결과 송부 대상이 되는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평점 및 서술식 평가내용을 포함한다),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 선정에 관한 내용(대상 법관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평가결과 송부 대상이 되는 법관의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 ① 위원회는 평가연도의 법관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한다.

②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법관평가 결과의 공개] ① 협회는 범위를 한정하여 법관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 여부 및 그 범위와 방식 등은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협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법관평가 결과 확인절차] ① 법관 인사 평정권자는 법관평가 점수가 다른 평정자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례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 등 인사 평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법관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조회에 대해 회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법관평가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 시에 평가자의 실명 및 사건번호를 비롯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평가대상 법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위원 등 법관평가업무에 관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2021년 법관평가표**
**2021년 법관평가표**

평가대상	법 원	평가일 [           년    월    일 ] 사건번호 [                                ] ] 평가변호사 등록번호 [                                ]				
	재판부					
	법관명					
항목	문항	평가				
공 정 (30)	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② 조정, 화해, 자백, 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③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증인신문시 불필요하게 시간 또는 문항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품 위·친 절 (20)	④ 빈말이나 빈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신 속 적·정 (20)	⑥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불필요한 기일 연기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⑦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간을 준수하고, 소송관계인이 부당하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주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직 능 무 력 직 무 성 실 (30)	⑧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에 있어 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⑨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등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⑩ 판결문(이유가 기재된 결정문 포함)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구체적 사례						
기타 의견						
평가 구분	○ 각 문항 당 평가는 ‘매우우수(10점)·우수(8점)·보통(6점)·미흡(4점)·매우미흡(2점)’ 등 5개로 평가 ○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 기재요망.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 가능.					